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지 방 자 치 단 체 의 행 정 기 구 와 정 원
기 준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 1. 13. 시행)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
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책지원전문인력 직급 등 규정(안 제15조)

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전문인력(정책지원관)을 시·도는 6급 이
하, 시·군·구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8. 30. ~ 10. 12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시·도는 6급 이하, 시·군·구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
2.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5조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시·도는 6급 이하, 시·군·구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</u> <u>원</u> <u>2.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지방공무원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자치분권제도과	
연 락 처	044-205-3313